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2024. 2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순서

1. 사업개요 1
2. 세부 운영 지침 2
- [참고] 단위기간별 근로자 산정 예시 7
3. 민원서식 8

1

사업 개요

- (목적)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24년 예산안) 10,789백만원
- (지원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방식) 공모형
- (지원요건) 기존 실근로시간 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 ① (계획수립)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추진계획 수립
 -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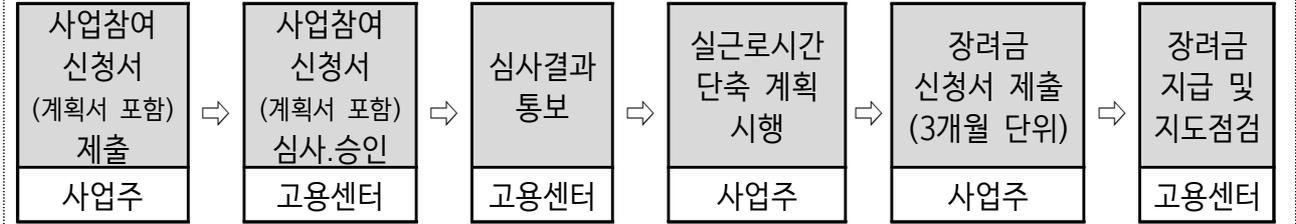
〈근로시간 관련 장려금별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일자리함께하기	위라벨일자리 I	위라벨일자리 II (실근로단축지원)
지원요건	교대제개편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 고용창출 → 근로자수 증가	근로자 요청, 개인 단위 주 소정 근로시간 단축 (35시간 이상→ 15~30시간 이상)	사업(또는 사업장) 단위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지원대상	전체 기업(대규모 포함)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사업방식	공모형	요건심사형	공모형
주기·기간	3개월, 2년	3개월, 1년	3개월, 1년
지원액	① 증가 근로자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 ② 임금 감소액 보전 (월 최대 40만원)	① 장려금 (월 30만원, 정액) ② 임금 감소액 보전 (월 20만원, 정액)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정액)

1 사업개요

-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문화개선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장려금 지원

〈워라벨 일자리 II 지원체계〉



2 참여 신청, 심사 및 승인

- ❖ 참여 신청, 심사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기준과 동일하고, 예외 사항만 별도 명시

1 (신청 단위)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참여 신청은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

다만,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로 분리된 사업장을 두고 있고,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장별 피보험자를 구분·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 및 지원 가능

2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사업체 현황(30점)	업체 규모, 지원요건 해당 여부, 근태관리가능성, 과거 고용안정사업 참여이력 등 사업체 특성 및 사업주 요건 심사
	사업내용(40점)	지원요건 해당 여부, 시행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 심사
	활용계획(30점)	제도활용 규모, 지속가능성, 근로시간 문화개선 효과 등 심사
우대기업 가점 (5점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 일터혁신 컨설팅 또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 고용부장관 또는 지방청·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사업' 또는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컨설팅' 진단참여 기업 	

③ 지원요건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 계획서 내용(예시): 시행(예정)일,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
- * 장려금 신청시 계획수립 또는 단축 시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빙 필요
↳ 단축 계획서 제출, 필요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제출

- (계획 이행)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대로 실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여야 함
- (이행 기간의 연장) 노사간의 협의 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전날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②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 명확한 근로시간 확인을 위해 단축 시행 전 3개월도 전자기계식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필요
-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록이 없는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는 해당 월의 실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하고, 해당 월의 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수에서도 제외함
-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기계 고장 등으로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기간이 해당 사업장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속 10일(고장일 당일 포함) 초과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중 20일 초과시 해당 3개월은 지원 불가

③ (실근로시간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하여야 함

- * 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 단축을 시행할 수 있는 점(유동적)을 고려해 '단축 시행 전 3개월'이라 함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의미

❖ (산정방식) = ^(㉗)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㉘)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소수점 이하 버림
*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을 4.3주(365일/12개월/7일)로 나눔

-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개인별로 산정하지 않고, 시행 단위 전체 피보험자의 실근로시간*을 시행 단위 전체 피보험자수**로 나누어서 산정

* 실근로시간은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

**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등 근로 형태, 내·외국인 등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사업장)에 산정 대상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수를 의미(단, 예술인·노무제공자 제외)

- 단축 전·후의 실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한도 준수 필요

* 3개월 단위로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장려금은 우선 지원하고, 추후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해당 사업장의 단축 장려금 전체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부정수급 등 검토)

*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근로개선지도과에 확인(단축 전 3개월에 대한 법 위반 확인은 심사위원회 개최 전 확인, 단축 후 법 위반 여부는 장려금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후 확인)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실근로시간 단축시간 산정 예시〉

* A사는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으로 '24.1.5. 사업계획 제출(승인 1.10) 후 2.1일 단축 시행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23.10~12월)의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51시간이고, 단축 후 3개월('23.2~4월)의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47시간이므로 동 사업장의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은 4시간으로 지원 가능

구분	단축 시행 전						단축 시행 후				
	'23.10	'23.11	'23.12	계	3개월 평균		'24.2	'24.3	'24.4	계	3개월 평균
김00	209	220	240			'24.1.10 승인	209	205	200		
이00	240	210	230				220	210	210		
오00	220	230	220				209	200	209		
강00	230	205	209				200	200	209		
계(㉠)	899	865	899			'24.2.1 단축 시행	838	815	828		
1인당 월평균(㉡)	224	216	224	664	221(㉢)		209	203	207	619	206(㉣)
1인당 주평균(㉤)	221시간/4.3주=51				51(㉥)		206시간/4.3주=47.9				47(㉦)

* (산정방식) ㉢=㉠/피보험자수, ㉣=㉡/3월, ㉤=㉢/4.3주 → 실근로시간 단축시간 = ㉥-㉦

* 소수점 이하 버림

4 장려금 신청 및 지원

- ①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실근로 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②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 ③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사업주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 ④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의 말일'을 의미

**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등 근로 형태, 내·외국인 등을 불문하고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 기준 재직 중인 피보험자를 의미(단, 예술인·노무제공자 제외)

- 지원 대상 근로자 중 특정인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았거나 증가한 경우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㉔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㉕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㉖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⑤ (지원 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⑥ (단축 장려금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정액)

〈근로시간 단축장려금 산정 예시〉

* '24.2.1. 실근로시간단축 계획을 이행하여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B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산정

→ '24.2월 108만원(12명×0.3×30만원)+'24.3월 90만원(10명×0.3×30만원)+'24.4월 90만원(8명→3명×30만원), 총 288만원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는 (지원 대상 근로자수 × 0.3)으로 계산

구분	입사일	비고	단축 시행 전			단축 시행 후		
			'23.10	'23.11	'23.12	'24.2	'24.3	'24.4
김00	20.1.1		○	○	○	○	○	○
이00	22.10.1	고보 상실일 '23.12.31.	○	○	-	×	×	×
강00	24.3.1		-	-	-	×	×	×
홍00	22.5.20		○	○	○	○	○	○
배00	23.11.29	고보 상실일 '24.4.30.	-	○	○	○	○	×
오00	23.2.1	고보 이직일 '24.2.29.	○	○	○	○	×	×
Billy	22.1.2	외국인	○	○	○	○	○	○
박00	22.1.20	24.3.5. 휴직중	○	○	○	○	○	○
오00	23.12.1		-	-	○	○	○	○
하00	23.11.20	고보 이직일 '24.3.31.	-	○	○	○	○	×
고00	22.1.10		○	○	○	○	○	○
권00	22.5.10		○	○	○	○	○	○
양00	22.6.20	고보 상실일 '24.3.31.	○	○	○	○	×	×
정00	22.10.30		○	○	○	○	○	○
월별 단축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합계						12	10	8

* (지원 대상자)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자

↳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등 근로 형태, 내·외국인 등은 모두 지원하되, 단축 시행 후 신규로 고용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참고

단위기간별 근로자 산정 예시

[예시1] 단축 시행일이 월의 초일인 경우 지급 단위 기간별 근로자 산정 방법

□ 계획제출일: '24.1.5.(1.10.승인), 단축시행일: '24.2.1. **지급단위기간: 매월 1일~말일**

성명	입사일	비고	구분	단축 시행 전 산정 대상 포함 여부			단축 시행 후(지급단위기간별) 산정 대상 포함 여부		
				'23.10.	'23.11.	'23.12.	'24.2.1. ~2.29.	'24.3.1. ~3.31.	'24.4.1. ~4.30.
하00	'23. 11.20.	고보 이직일 '24.3.31.	실근로시간 산정시	-	X	○	○	○	X
			장려금 산정시	-	○	○	○	○	X
양00	'22. 6.20.	고보 상실일 '24.3.31.	실근로시간 산정시	○	○	○	○	X	X
			장려금 산정시	○	○	○	○	X	X

☞ 실근로시간단축 산정 대상자

- 단축 전 3개월: 각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자
- 단축 후 3개월: 각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

☞ 장려금 산정 대상자

- '23.12.31. 재직중인 근로자 중 단축 시행일부터 매월 말일(지급단위기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자

[예시2] 단축 시행일이 월의 초일이 아닌 경우 지급 단위 기간별 근로자 산정 방법

□ 계획제출일: '24.1.5.(1.10.승인), 단축시행일: '24.2.15. **지급단위기간: 매월 15일~익월 14일**

성명	입사일	비고	구분	단축 시행 전 산정 대상 포함 여부			단축 시행 후(지급단위기간별) 산정 대상 포함 여부		
				23.10.	23.11.	23.12.	'24.2.15. ~3.14.	'24.3.15. ~4.14.	'24.4.15. ~5.14.
하00	'23. 11.20.	고보 이직일 '24.3.14.	실근로시간 산정시	-	X	○	○	X	X
			장려금 산정시	-	○	○	○	X	X
양00	'22. 6.20.	고보 상실일 '24.3.14.	실근로시간 산정시	○	○	○	X	X	X
			장려금 산정시	○	○	○	X	X	X

☞ 실근로시간단축 산정 대상자

- 단축 전 3개월: 각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자
- 단축 후 3개월: 각 해당 월 단축 시행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지급단위기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자

☞ 장려금 산정 대상자

- '23.12.31. 재직중인 근로자 중 단축 시행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지급단위기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자

3

민원서식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참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기업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폰: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업종명	업종코드	

신청자격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
------	--	-------------

우대사항	<input type="checkbox"/>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일터혁신컨설팅, 근무혁신 우수기업 또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input type="checkbox"/>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기업 <input type="checkbox"/>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사업 등 참여 등	
------	---	--

사업계획	① 단축 시행일(00년 00월 00일) ② 지원 필요성 및 지속 방안 ※ 지원금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실근로시간단축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중견기업확인서 3.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4.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5.기계·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월별 임금대장 7. 1~6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고)인 또는 수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결재 연월일
공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사업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2쪽)

1. 단축 시행 전

구분	단축 계획 시행 전 3개월 월 평균 실근로시간				3개월 평균 실근로시간(⑤)
	00.0월	00.0월	00.0월	계(④)	
총 근로시간(①)					
해당 월의 피보험자수(②)			A		
1인당 월 평균 실근로시간 (③=①/②)	③	③	③	④=③의합계	⑤=④/3개월
⑥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⑥=⑤/4.3주)	
작성방법	① 총 근로시간: 시행 단위(사업장) 내 월별 피보험자의 총 실근로시간 ② 해당 월의 피보험자수: 단축 시행 전 3개월간의 월별 피보험자 수 ③ 1인당 월 평균 실근로시간: ① ÷ ②, 소수점 이하 버림 ④ 시행 전 3개월 1인당 월 평균 실근로시간의 합계 ⑤ 시행 전 3개월 평균 실근로시간(④/3개월) ⑥ 시행 전 3개월 간 1인당 주평균 실근로시간: ⑤/4.3주				

2. 제도 시행 후

구분	단축 계획 시행 후 3개월 월 평균 실근로시간				3개월 평균 실근로시간(⑩)
	00.0월	00.0월	00.0월	계(⑨)	
총 근로시간(a)					
해당 월의 피보험자수(b)					
1인당 월 평균 실근로시간 (c=a/b)	c	c	c	d=c의합계	e=d/3개월
f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f=e/4.3주)	
작성방법	a 총 근로시간: 시행 단위(사업장) 내 월별 피보험자의 총 실근로시간 b 해당 월의 피보험자수: 단축 후 3개월간의 월별 피보험자 수 c 1인당 월 평균 실근로시간: a ÷ b, 소수점 이하 버림 d 시행 전 3개월 1인당 월 평균 실근로시간의 합계 e 시행 전 3개월 평균 실근로시간(⑨/3개월) f 시행 전 3개월 간 1인당 주평균 실근로시간: e/4.3주				

3.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단축 시행 전 월말 피보험자수(A) (지원 대상 인원수)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⑥)	단축 시행 후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f)	근로자 1인당 주평균 실근로시간 단축시간(⑥-f)

사업주 확인서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대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업종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흥업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주점업:56219,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91239, 무도장운영업:91291)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2조의2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관리는 신청 대상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해당 사업(사업장)의 단축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의 승인, 불승인 및 지원액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직인)

[별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서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서는 1장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

(4쪽 중 4쪽)

<p>기업 소개</p>	<p>* 기업 연혁, 주요 사업 등 간단한 기업 소개</p>
<p>근로 현황</p>	<p>*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 등 장시간 근로 현황 * 사업장에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 등</p>
<p>단축 계획</p>	<p>① 단축 목표 시간: 주 평균 □ 시간 단축 ② 단축 계획 시행일 : 2024년 □월 □일</p>
<p>구체적인 단축 방법</p>	<p>*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 시간제, 시차출 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도입·활용 계획, 연장근로시간 관리 방안, 연차제도 활성화 등 구체적인 단축 계획 작성</p>
<p>선정 필요성 및 지속 방법</p>	<p>* 지역·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기업의 동 사업 선정 필요성과 장려금 지원 기간 종료 이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방향 등 기재</p>

유의사항 및 지원 제외 대상

- 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계획변경신청서(고시 별지 제42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함
- 라. 인수·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받은 사업주가 '사업계획변경신청서'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마. 사업주는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바.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단축 시행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급신청서(고시 별지 제43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을 지원 받기 위해 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경우, 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하여야 하고, 특히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제척기간)에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음에 유의
 -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단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
 - 지원 인원은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이고,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
 - 제도 시행 전후 3개월간의 실근로단축시간 산정은 산정 대상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전체 기간에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
- 사.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는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 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해당 사업(사업장)의 단축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자. 본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2.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나.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다. 단축 시행 전부터 재직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종 취득에 의한 상실 등으로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마.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지급 신청서(1, 2, 3, 4회차)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기업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폰: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업종명	업종코드	

신청자격	신청 근로자는 월 평균보수가 115만원 이상입니다.	예[] 아니오[]
	신청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예[] 아니오[]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

계획내용	단축 시행일	00년 00월 00일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기준시간, ㉑)	00시간
------	--------	-------------	--	------

<단축 시행 후 매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근로시간 현황>

구분	00.0월	00.0월	00.0월	계(④)	3개월 평균 실근로시간(⑤)
총 근로시간(①)					
해당 월의 피보험자수(②)					
1인당 월 평균 실근로시간 (③=①/②)	③	③	③	③의합계	④/3개월
⑥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⑥=⑤/4.3주)	

작성방법

- ① 총 근로시간: 시행 단위(사업장) 내 월별 피보험자의 총 실 근로시간
- ② 해당 월의 피보험자수: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간의 월별 피보험자 수
- ③ 1인당 월 평균 실 근로시간: ① ÷ ②, 소수점 이하 버림
- ④ 시행 전 3개월 1인당 월 평균 실근로시간의 합계
- ⑤ 시행 전 3개월 평균 실근로시간(④/3개월)
- ⑥ 시행 전 3개월 간 1인당 주평균 실근로시간: ⑤/4.3주

단축 후 실근로시간 현황			단축장려금 신청		
기준시간 (㉑)	단축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⑥)	근로자 1인당 주평균 실근로시간 단축시간(㉑-⑥)	신청기간	신청인원	신청금액
			00.0월	00명	00명×0.3×30만원 (단, 신청인원 10명 미만시 3명×30만원)
			00.0월		
			00.0월		

단축장려금 신청금액 합계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	-----	------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관련 서류 2. 단축장려금 신청대상자 명부 3. 기계·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월별 임금대장 5.1~4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고)인 또는 수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결재 연월일	
공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사업주 확인서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대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업종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희업종:56211, 무도유희주점업:56212, 기타주점업:56219,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91239, 무도장운영업:91291)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2조의2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관리는 신청 대상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 신청 대상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임금대장 상의 연장근로 시간은 명시적으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 추후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사업장) 단위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해당 사업(사업장)의 단축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의 승인, 불승인 및 지원액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작성방법

- **사업장 현황**
 -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③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가 4대보험공단에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 작성
 - ④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작성
- **지급계좌**
 - ⑤ **지급계좌:** 예금주가 “사업주 또는 상호명(법인명)”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번호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2쪽 중 1쪽)

장려금 신청서 접수번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계획내용	단축 시행일	00년 00월 00일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기준시간, ㉮)	00시간
지급 결정 내용				
지급대상기간	실근로시간 단축시간		지급결정인원	지급결정액
'00.0월 ~ '00.0월	시간		명	원
부지급 또는 일부지급 사유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조제 1항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통지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